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81

발의연월일: 2021. 1. 19.

발 의 자:이병훈·전혜숙·김승원

정성호 · 김경만 · 박성준

최종윤 · 안규백 · 김영호

이원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입증자료를 갖추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본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개선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며, 특히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더 단축하여 주민등록변경제도 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법률 제 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등록지의"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의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통지 및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7조의5제3항 본문 중 "6개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개월의"를 "1개월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단서 중 "제6항제1호에"를 "제7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에"를 "제12항에"로 한다.
 - ④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제1항 및 제5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당시 청구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심사·의결 기간에 관하여는 제7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u>주민등</u>	<u>주민등</u>
<u>록지의</u>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록지 또는 거주지의
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u>다만, 신청인의</u>
	<u>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u>
	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
	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
	<u>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u>
	는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
	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u>한다.</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
	른 신청, 통지 및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u>할 수 있다.</u>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 회) ①·② (생략) 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 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변경 결정 이 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주민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변경위 원회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 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 ⑦ (생 략)

⑧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제7소의3(구현중국민모현정기전
회) ①・② (현행과 같음)
3
3개월
1개월의
④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
<u>항에 따른 청구의 중대성·시급</u>
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청
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
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⑤</u> ~ <u>⑧</u> (현행 제4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9

수 있다. 다만, <u>제6항제1호에</u>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 다.

<u>⑨</u> ~ <u>⑪</u> (생 략)

① 변경위원회와 <u>제11항에</u> 따른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7항제1호에</u>
⑪ ∼ ⑫ (현행 제9항부터 제1
1항까지와 같음)
<u> ①</u> <u>체12항에</u>